



「2024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

2024. 2. 21.(수)

사업운영부
(전문체육팀)

목 차

1. 추진목적	1
2. 모집개요	1~2
3. 신청 및 모집계획	2~4
4. 선발 및 평가계획	4~6
5. 제출안내	7~9
별첨 1. 2024년 중위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0

2024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

사업운영부장 : 이창환 ☎490-2708 전문체육팀장 : 이소정 ☎2718 담당 : 서연주 ☎2778

서울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시 체육인재 육성·발굴과, 장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1 추진목적

□ 추진목적

- 서울시 소속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시의 체육복지를 증진시키고, 미래의 체육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함
- 우수한 실력을 갖춘 저소득 학생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운동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서울시 학생 선수들의 소속감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강하고 건전한 심신 육성에 기여

2 모집개요

□ 세부개요

- 장 학 명 : 2024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 지원기간 : 2024. 3.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선수
※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에 한하며, 2024년 3월 학년 기준 적용
- 내 용 :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선발규모 : 122명 내외

구 분	선정인원			
	총 계	초	중	고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122명	15명	32명	75명

※ 상기 인원은 접수자 지원을 및 학교체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방법 : 본회 학교체육위원회 심의·선정

※ 신청자 규모에 따라 학교체육(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초등(2,000천원), 중등(3,000천원), 고등(4,000천원)

- 초등 : 금200,000원×10개월=금2,000,000원('24. 3. ~ 12월)

- 중등 : 금300,000원×10개월=금3,000,000원('24. 3. ~ 12월)

- 고등 : 금400,000원×10개월=금4,000,000원('24. 3. ~ 12월)

○ 지급방법 : '24. 3. ~ 12월 매월 20일경 대상자(학생) 계좌로 온라인 송금

3

신청 및 모집계획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1.(수) ~ 3. 5.(화)까지 * 제출기한 엄수

※ 개인 및 학교는 해당 市회원종목단체 장학생 신청자 서류취합 및 본회 제출기간을 고려하여 2024. 3. 4.(월)까지 회원종목단체로 제출 요망

○ 제출방법 : 전자문서 공문 제출

○ 추천방법 : 해당 市회원종목단체장 추천

○ 제출경로 : 장학생 신청자 또는 학교 ➡ 市회원종목단체 ➡ 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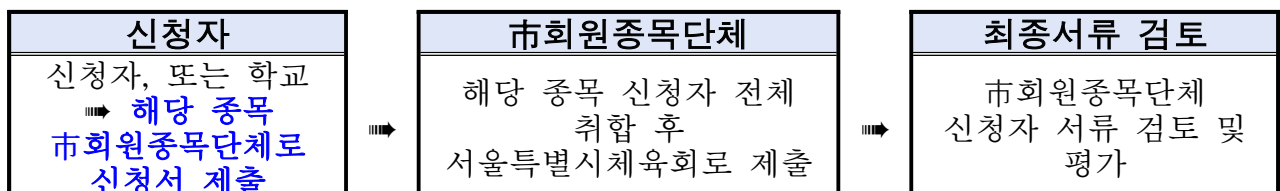
※ 장학생 신청자와 각 신청 학교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로 직접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市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출 경로 예시

① 장학생(축구 종목) 개인 신청자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신청서류 제출

② 학교(농구 종목) 신청자 ➡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신청서류 제출

○ 서류 제출 경로



□ 지원자격(*필수)

- ①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 ② 해당 종목 선수등록 기간 1년 경과자로서, 서울시 대표로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 ③ 전국규모대회<* 2023년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기타 중앙경기단체 전국규모대회 등>, 서울특별시장기대회 등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
- ④ 가정 환경 관련 해당 요건 충족자

연번	구분	연번	구분
1	기초생활수급자	8	새터민가정
2	차상위계층	9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3	한부모가정	10	조부모 부양 가정
4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교육비 지원 대상자	11	조부모 가정
5	장애인가정	12	긴급위기 가정 <보호자 수감, 파산, 개인회생>
6	중증질환자 가정	13	임대아파트 거주 가정
7	다문화가정	14	학업 성적 우수자

□ 선발제한

- ①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①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자
- ②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

- ② 2024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 ③ 형제, 자매 선수(*1가구, 1명 지원)
- ④ 서울시 거주자이나 타 시·도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장학금 지원 중단

- ① 3개월 이상 휴학 등의 사유로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 ② 학생 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 ③ 법정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④ 장학금 지원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①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자
- ②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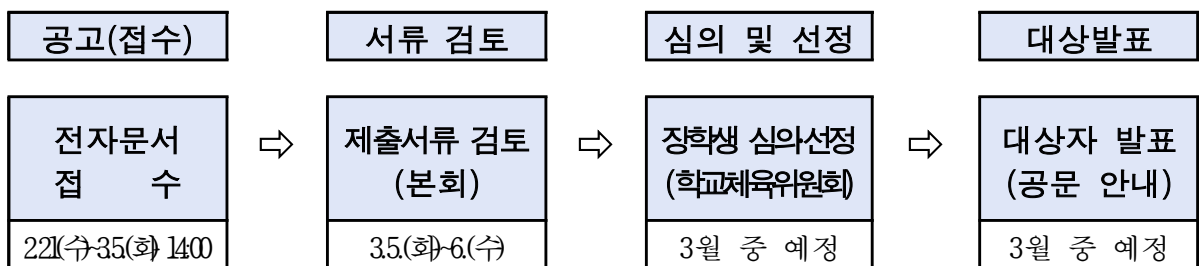
⑤ **가정환경 및 수상실적 허위 기재 혹은 무효 대회**<전국규모가 아닌 대회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실적을 제출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확인 즉시 **장학생 선정을 취소**하고 **장학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
추후 2년 동안 본회 각종 장학금 지원 사업 추천 대상에서 제외

「체육인 복지법」 제23조<장학금 반환 의무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⑥ 장학금 지원 기간 중 서울 이외의 타·시도로 전학할 경우

⑦ 장학생으로서, 선수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운동 의지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추진일정**



4

선발 및 평가계획

□ **선발방법**

- 선발방법 : 본회 학교체육위원회 심의·선발('24. 3월 중 예정)
- 평가방법 : 신청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량적 평가로 환산·채점
- 종합평가 점수(가정환경, 경기실적) 고득점자 차순위별 선발

□ 평가기준

① 가정 환경 관련<최대 : 88점>

(단위 : 점)

연번	내용			점수	구비서류
1	해당 분야 <1개>	기초생활 수급자 <40점>	기본<38점>	38점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정부24> * 학생명의 발급
생계급여<0.8점>			0.8점		
의료급여<0.6점>			0.6점		
주거급여<0.4점>			0.4점		
교육급여<0.2점>			0.2점		
2	최고 점수 부여	차상위계층<35점>		35점	①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학생명의 발급
한부모가정<30점>		30점	①한부모가족 증명서 <정부24> * 학생명의 발급		
교육비 지원 대상자<25점>		25점	①나이스(NEIS) 교육비 지원 확인서 <수강료,급식비 등><소속 학교 발급>		
5	해당 진별 점수 부여	장애인 가정		4점	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6		중증질환자 가정		4점	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7		다문화 가정		4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증
8		새터민(북한이탈자) 가정		4점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9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4점	①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② 주민등록등본(학생명의)
10		조부모 부양 가정		4점	①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② 주민등록등본(학생명의)
11		조부모 가정		4점	①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② 주민등록등본(학생명의)
12		긴급 위기 가정	1) 보호자 수감	4점	① 수용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2) 파산신청	4점	① 파산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회생 가정	4점	① 개인회생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
13		임대아파트 거주 또는 5,000만원 이하 월세 거주 가정		4점	①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② 월세 계약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14		학업 성적 우수자		4점	① 전 학기 성적증명서

② 경기실적 관련<최대 : 20점>

(단위 : 점)

구분	전국규모대회			서울시장기대회			경기력 가산점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득점왕, 최우수선수, MVP 등
점수	10	9	8	7	6	5	3
증빙 서류	중앙경기단체 경기실적증명서			市회원종목단체 경기실적증명서			중앙경기단체 경기실적증명서 市회원종목단체 경기실적증명서

※ 경기실적은 `23.1.1. ~ `24.2.28.까지 개최되고, 경기실적 증빙이 가능한 대회에 한함.

※ 전국대회규모, 서울시장기대회 각 해당하는 가장 높은 점수 분야 1개씩만 부여

예시1) 전국규모대회 1위, 2위, 3위 수상자(10점 부여)

예시2) 서울시장기대회 1위, 2위, 3위 수상자(7점 부여)

예시3) 전국규모대회 1위, 2위, 3위, 서울시장기대회 1위, 2위, 3위 수상자(17점 부여)

예시4) 전국규모대회 2위, 3위, 서울시장기대회 2위, 3위, 경기력 가산점 해당자(18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 ② 차상위계층 ➡

③ 한부모가정 ➡ ④ 경기실적 우수 선수<4순위, 하단 선발 순서 참조> ➡

⑤ 저학년(생년월일) ➡ ⑥ 학교운동부 ➡ ⑦ 클럽운동부

※ 4순위 : 대회 실적 우수 학생 선수<4순위 내에서, 아래 순서에 따라 추천>

① 국내 전국규모대회 1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

② 국내 전국규모대회 2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

③ 국내 전국규모대회 3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

④ 서울시장기대회 1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

⑤ 서울시장기대회 2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

⑥ 서울시장기대회 3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

※ ① ~ ③ 항목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국체육대회(동계 포함)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선수 우선 선발

5

제출 안내

□ 제출서류 구분

개인 제출서류 <신청자 ➡ 종목별 市회원종목단체>	市회원종목단체 제출서류 <市회원종목단체 ➡ 서울특별시체육회>
[필수 제출서류] ① 추천서<*붙임1> ② 재학증명서 또는 배정확인서 ③ 선수등록 확인서<중앙경기단체 발행> * 최근 1개월 이내 ④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 최근 1개월 이내 ⑤ 학생선수 명의 통장사본 * 부모 및 타인 통장, 적금통장, 청약통장, 장기 미사용 정기 통장, 증권계좌 등 제출 불가 * 입금한도 및 거래 중지 여부 확인 후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붙임6> [해당자 제출서류] ⑦ ~ ⑳ 해당자 서류 제출<*붙임7 참조>	① ~ ⑳ “개인 제출서류 동일” * 장학생 추천명단(* 공문 붙임 엑셀 서식) * 해당 협회 장학생 신청자 서류 취합 후 본회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①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생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 ② 재학증명서 또는 배정확인서(입학 예정 증명서) 1부<*붙임2 참조>
- ③ 2024년도 선수등록 확인서(해당 중앙경기단체) 1부<*붙임3 참조>
 ※ ‘24년도 발급 불가 시, ‘23년도 자료 제출 후, 장학생 선정 시 ‘24년 자료 제출
- ④ 2023년도 경기실적 증명서(해당 중앙경기단체) 1부<*붙임4 참조>
- ⑤ 학생 명의 통장사본 1부<*붙임5 참조>

<지급가능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 부모 및 타인 계좌 불가

※ 예금, 적금, 청약, 증권사 계좌 불가

※ 입금한도 초과, 거래 중지 계좌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요망

-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6 참조>

□ 해당자 제출서류

연번	구분		증빙서류
7	기초생활수급자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정부24> * 학생 명의 발급
8	차상위계층		①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학생명의 발급
9	한부모가정		①한부모가족 증명서 <정부24> * 학생명의 발급
10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비 지원 대상자		①나이스(NEIS) 교육비 지원 확인서 <수강료, 급식비 등><소속 학교 발급>
11	장애인가정		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12	중증질환자 가정		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13	다문화가정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증
14	새터민가정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15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①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② 주민등록등본(*학생명의)
16	조부모 부양 가정		①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② 주민등록등본(*학생명의)
17	조부모 가정		①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② 주민등록등본(*학생명의)
18-1	긴급위기 가정	보호자 수감	① 수용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18-2		파산	① 파산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
18-3		개인회생	① 개인회생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
19	임대아파트 거주 또는 5,000만원 이하 월세 거주 가정		①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② 월세 계약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20	학업 성적 우수자		① 전 학기 성적증명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①~⑥)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해당자 제출서류(⑦~⑳) 미제출 시 관련 내용 불인정
- 장학생 신청자 제출서류는 개인별 PDF 문서(①~⑳번, * 반드시 번호순)로 1개의 파일로 저장 후, 전체 추천 대상자 폴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 파일 스캔 순서는 반드시 번호순으로 작성
예) : 1.초_한국초_5학년_축구_홍길동_남 * 엑셀 순서도 동일하게 기재
※ 개인 제출서류 전체 압축폴더명 : 추천단체명_추천인원수 예시) ○○시검도회_3명
- 개인 및 클럽으로 소속된 선수들은 「붙임9」 연락처 및 이메일을 참고하여, 해당 종목 市회원종목단체로 신청서 제출 예정
- 공문 용량 초과 시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공문에 “용량 초과로 붙임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기입)
 - 사업운영부 전문체육팀 담당자<suh1026@seoulsports.or.kr>
 - ※ 본회로 공문 제출 후 유선(☎ 02-490-2778) 확인 요망
- 공문 발송 시 보안결재 및 비공개(6호) 처리
- 장학생 추천명단 작성 유의사항
 - 기초정보, 입상실적 등을 정확히 기재
 - 대회실적은 2023.1.1.부터 추천마감일<2024.3.5.> 내 개최하여, 경기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대회만 인정하며, 대회명 앞에 반드시 개최 연도를 기재
* 예)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대회실적 기재 시, 개최연도(내림차순) 순으로 기재
 - 추천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 없음” 으로 간주
- 회원종목단체 미등록 학생 및 미승인 학생 선수는 본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
- 예산 및 추천대상자 현황을 고려하여 최종 장학생 선정 인원은 기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 장학금 대리수령(대리인 계좌) 불가
- 선수등록 확인서 2024년 발행 불가 시, 2023년도 선수등록 확인서, 제출 후, 추후 2024년도 자료 제출

별첨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6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075,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733,121원 = 2,437,878원(6인기준) + 295,243원(6인기준 - 5인기준)